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민방위 대원의 편성·교육훈련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및 지원민방위대의 별도 구성 근거 마련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0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1. 제안이유 .....                               | 1  |
| 2. 주요내용 .....                               | 2  |
| III . 검토의견 .....                            | 4  |
| 1.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 | 4  |
| 2. 지원민방위대의 별도 구성 및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 9  |
| 3. 민방위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              | 15 |
| 4.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한 문자·방송·디지털광고 요청 근거 마련 ..... | 17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

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Ⅲ. 검토의견

#### 1.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대원의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민방위 대원의 조직·편성 대상 및 교육훈련 면제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 병역사항 및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제9조의2(자료제공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대원의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민방위대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p> |

| 현행 | 개정안                                                                                                                                                                                              |
|----|--------------------------------------------------------------------------------------------------------------------------------------------------------------------------------------------------|
|    | <p><u>전화번호를 포함한다)</u></p> <p>2. <u>재직증명, 병역사항 등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u></p> <p>3. <u>출입국기록 등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u></p>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군무원·예비군 그 밖에 학생·심신 장애인·만성 허약자 등을 제외하고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음<sup>1)</sup>).

1)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학생
  -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예비군의 경우 예비역인 장교 등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조직<sup>2)</sup>되므로,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현행법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전환됨.

또한,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및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sup>3)</sup>하고 있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 민방위 자원은 2024년 기준 민방위

---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 2)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단서 생략).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 3)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대장 83,559명과 민방위 대원 3,201,838명을 더하여 총 3,285,397명에 달함.

## [2024년 민방위 자원 현황]

(단위: 대, 명)

| 구분                | 민방위대 <sup>4)</sup> | 민방위 자원 현황 |        |           |
|-------------------|--------------------|-----------|--------|-----------|
|                   |                    | 계         | 대장     | 대원        |
| 합계                | 84,768             | 3,285,397 | 83,559 | 3,201,838 |
| 통리대 <sup>5)</sup> | 76,759             | 2,971,815 | 75,643 | 2,896,172 |
| 기술대 <sup>6)</sup> | 243                | 17,620    | 243    | 17,377    |
| 직장대 <sup>7)</sup> | 7,766              | 295,962   | 7,673  | 288,289   |

자료: 행정안전부

- 4)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 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② 제1항제1호의 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 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처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대원의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년 다수 발생하는 예비군 기간 만료자들의 민방위대 편입조치 및 교육훈련 면제자 변동 사항 반영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방위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 2. 지원민방위대의 별도 구성 및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민방위 의무 대상자가 참여하는 지역 및 직장 단위 민방위대 외에 지원자만으로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민방위대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동원, 벌칙,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 19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제17조(설치 등) ①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한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민방위대를 제1항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둘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r>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민방위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조직) ① (생략)<br>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u>지원하여</u>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후단 신설><br><br>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u>중앙민방위협의회의</u> 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u>지원하여</u>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이 경우 <u>지원한 대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br>③ -----<br>-----<br>----- <u>중앙협의회</u> ----<br>-----<br>-----<br>-----<br>-----<br>-----. |
| 제19조(편성) ① ~ ④ (생략)<br>⑤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폭지원 <u>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u> 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br>⑥ ~ ⑪ (생략)                                                                                                                                             | 제19조(편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 <u>대원</u> , ----- <u>대원</u> 및 <u>지원민방위 대원</u> 은 -----.<br>⑥ ~ ⑪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두도록 규정<sup>8)</sup>하고, 민방위대를 20세부터 40세의 남성으로 조직<sup>9)</sup>하

8)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9)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도록 하면서 그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sup>10)</sup>하고 있음.

저출생 및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의무민방위대 대상자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전시·평시에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시·도는 지원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 현황]

(단위: 만명)

| 연 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총 계 | 33.4 | 29.1 | 25.9 | 25.7 | 24.6 |

자료: e-나라지표 병역자원 현황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지원민방위대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총 6,315명이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음.

10)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시·도 지원민방위대 현황]

(단위: 명)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계 | 24,226 | 6,384 | 5,661 | 6,117 | 6,315 |
| 서울 | 575    | 399   | 397   | 406   | 396   |
| 부산 | 1,193  | 334   | 315   | 293   | 207   |
| 대구 | 125    | 12    | -     | -     | -     |
| 인천 | 106    | 172   | 85    | 58    | 88    |
| 광주 | 1,033  | 80    | 80    | 80    | 2     |
| 대전 | 19     | 141   | 141   | 124   | 112   |
| 울산 | 6      | 20    | -     | -     | -     |
| 세종 | 73     | -     | -     | -     | -     |
| 경기 | 614    | 311   | 402   | 389   | 306   |
| 강원 | 6,952  | 89    | 31    | 32    | 31    |
| 충북 | 1,062  | -     | -     | -     | 10    |
| 충남 | 2,278  | 30    | 29    | 38    | 32    |
| 전북 | 426    | 234   | 186   | 145   | 160   |
| 전남 | 584    | 41    | 68    | 22    | 18    |
| 경북 | 4,925  | -     | -     | 64    | -     |
| 경남 | 2,222  | 4,421 | 3,836 | 4,375 | 4,867 |
| 제주 | 2,033  | 100   | 91    | 91    | 86    |

자료: 행정안전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6,315명 중 여성민방위대가 5,652명으로 약 90%를 차지하여 구성이 편중되는 측면도 있음.

## [2024년도 시·도별 지원민방위대 현황]

(단위: 대, 명)

| 구분 | 합계  |       | 여성민방위대 |       | 일반지원민방위대 |       |
|----|-----|-------|--------|-------|----------|-------|
|    | 대수  | 대원(명) | 대수     | 대원(명) | 대수       | 대원(명) |
| 총계 | 419 | 6,315 | 400    | 5,652 | 19       | 663   |
| 서울 | 13  | 396   | 6      | 153   | 7        | 243   |
| 부산 | 1   | 207   | -      | 147   | 1        | 60    |
| 대구 | -   | -     | -      | -     | -        | -     |
| 인천 | 3   | 88    | -      | -     | 3        | 88    |
| 광주 | 81  | 2     | 81     | 2     | -        | -     |
| 대전 | 4   | 112   | 4      | 112   | -        | -     |
| 울산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경기 | 5   | 306   | 2      | 117   | 3        | 189   |
| 강원 | 1   | 31    | 1      | 31    | -        | -     |
| 충북 | 10  | 10    | 10     | 10    | -        | -     |
| 충남 | 1   | 32    | 1      | 30    | -        | 2     |
| 전북 | 6   | 160   | 3      | 93    | 3        | 67    |
| 전남 | 1   | 18    | 1      | 18    | -        | -     |
| 경북 | -   | -     | -      | -     | -        | -     |
| 경남 | 293 | 4,867 | 291    | 4,853 | 2        | 14    |
| 제주 | -   | 86    | -      | 86    | -        | -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지원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자로만 구성된 지원민방위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원 명령 불응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미적용하려는 것으로, 지원민방위대의 확대를 통한 민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원민방위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원민방위대의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할 경우 그것이 하나의 입법관례를 형성하여 다른 자율조직·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 3. 민방위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 담당 교관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3조의3(민방위 담당자 교육) ①</p> <p>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2. 민방위 대장</p> <p>3. 제23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면서,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 및 기술·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전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1)</sup>

1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민방위 업무 담당자,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의 기관 등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 집단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민방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만, 현재 민방위 대원인 사람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개정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복해서 교육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두는 등 중복교육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4.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한 문자·방송·디지털광고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문자 송신, 음성·자막방송의 실시, 디지털광고물 자막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 ⑤ (생략)<br><u>&lt;신설&gt;</u>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 ⑤ (현행과 같음)<br><u>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 및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br>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

| 현행 | 개정안                                                                                                                                                                                                                      |
|----|--------------------------------------------------------------------------------------------------------------------------------------------------------------------------------------------------------------------------|
|    | <p>제공하는 사업자: 문자 송신</p> <p>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 실시</p> <p>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디지털광고물 자막 게재</p> |

현행법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sup>12)</sup>하고 있음.

- 12)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12개 부·처·청 공동예규)의 경보 전달체계에 따라 중앙정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방송사의 경우 라디오·텔레비전 문자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 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각각 문자 송신, 음성 또는 자막 방송의 실시 및 디지털광고물 자막 게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경보 전달 체계를 통하여 민방위 경보를 동시에 광범위하게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봄.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민방위 경보의 전파를 위한 개정안의 요청 대상이나 조치 범위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유사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49